

1. 1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규정

2006.08.03 제정

2014.01.07. 개정

2020.09.01 개정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 (이하 ‘연구단’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연구단의 임무) 연구단은 수의학분야의 학문후속 세대육성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원한다.

제 3조 (조직) 연구단에 운영위원회, 실무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행정실을 둔다.

제 4조 (운영위원회)

- (1) 위원회는 소속 사업팀장, 수의과대학 학장, 기획부학장(당연직) 및 소수의 연구단 참여 교수로 구성되며, 실무위원 중 1인이 간사를 맡으며,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된다.
- (2)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.
- (3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조 (실무위원회)

- (1) 실무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.
- (2) 실무위원은 단장을 도와서 행정, 재무, 기획, 교육, 국제, 산학협력 및 기타 실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(3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① 연구단의 연간 사업계획
 - ② 계약제 교수 및 교류 교수 선정과 관련된 사항
 - ③ 박사후과정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
 - ④ 참여 대학원생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
 - ⑤ 기타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(4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 (계약제 교수)

- (1) 계약제 교수의 임용,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“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”에 준한다.
- (2) 계약제 교수에 관한 운영세칙을 따로 둘 수 있다.

제 7조 [박사후연구원]

- (1) 박사후연구원의 임용,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“서울대학교 연구원임용 규정 및 연수연구원 규정”에 준한다.
- (2) 박사후연구원에 관한 운영세칙을 따로 둘 수 있다.

제 8조 (분과위원회)

- (1)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(2) 분과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
- (3)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.

제 9조 (자문위원회)

- (1) 연구단의 주요 정책과 평가에 관한 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10조 연구단의 회계관리는 “4단계두뇌한국(BK)21 사업예산편성및집행기준” 과 “4단계두뇌한국(BK)21사업관리운영지침”에 따른다.

제 11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◁ 부 칙 ▷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6. 8. 3)로부터 시행한다.